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9.5.)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종설]

목 차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24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29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34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4.

2. 제정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상위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함.
-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위임된 영업장소와 신고서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공연·전시·도서시설 등의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역행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8. 1. ~ 8.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를 조례로 확대함으로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2.] [총리령 제1300호, 2016.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5.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삭제 <2016.6.30.>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식품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식품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식품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⑪ (생략)

[별표 15의2] <개정 2015.10.21.>

식품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

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 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 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줄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91호, 2016.1.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 9. (생략)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63호, 2016.5.10., 일부개정]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0.] [국토교통부령 제340호, 2016.7.20., 일부개정]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30.] [법률 제13681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20.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기반시설)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 가. 일반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
- 다. 보행자전용도로
- 라. 보행자우선도로
- 마. 자전거전용도로
- 바. 고가도로
- 사. 지하도로

2. ~ 3.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8.] [법률 제12673호, 2014.5.28., 타법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4.

2. 개정이유

- 군수 직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공인의 종류별 규격 변경(안 제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별표와 같이 변경함.
 - 나. 공인의 인영 사항을 변경(안 제5조)
 -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인영 선택의 폭을 넓히고
 -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추가함.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반영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40조, 별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2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6. 20. ~ 7. 10.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군수 직인을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변경하고 공인의 인영사항을 변경함.
-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국무회의	5.4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인	대통령	4.5
	국무총리	3.6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3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7.11.] [행정자치부령 제76호, 2016.7.11., 일부개정]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

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4.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2세 이하 저학년 보육

(변경)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27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원장은 60세,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57세

(변경)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 2007추134 :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 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

다.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수탁자 의무 중 일부,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 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함.
 - ※ 상위법령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판례 2007추134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7. 18. ~ 8. 08.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참고자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이승진 등 33명	안 제14조 근무상한 연령 삭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년에 맞추어 60세로 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 교직원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대법원판례(2007추13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장과 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권리 제한으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어 무효 - 따라서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함 	의견 미반영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3.30.]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6.3.30., 일부개정]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2.]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96호, 2016.2.3., 일부개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공립어린이집 수탁의 제한 및 보육교사 등의 정년 제한 등 관련(「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6조의1 관련)
~ 생략~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공립보육시설 조례 제6조의2제3항에 따르면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은 5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가 제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효력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은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제20조)와 자격(제21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립보육시설 조례 제6조의2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참조).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을 50세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판례 2007추134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3.
- 나. 제 출 자: 거창군의회의회장
- 다. 회부일자: 2016. 8. 24.

2. 제정이유

-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5조)
- 다.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증기준의 관련 법령을 명시함(안 제4조)
- 마. 인증 사후관리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 바. 인증확산 및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의2,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2017년 7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복지정책과(여성아동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 . ~ . . .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적용대상을 정하고 지원대상 시설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군민 생활의 편리성 도모와 인증취득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으로 사료되며

다.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 상위 법령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증수수료 지원 :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 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 지원 :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 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임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목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도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일부개정]
 [시행 2015.8.3.]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2015.8.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4.

2. 제안이유

-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거창군 소유 토지에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서 신규차량(물탱크) 배치를 위한 차고 진입(높이) 공간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적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증축에 대한 승낙 요청이 있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증축을 승낙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가조119안전센터 운영현황

- 관할지역 : 3개면(가조면, 가북면, 남하면)/ 면적 212km²
-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
- 2010년도 안전센터 승격이후 필수공간 협소로 2013년 1층과 2층 증축 후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물탱크 차량 배치와 적재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증축 예정임

○ 청사현황

- 토지(소유:거창군) : 가조면 마상리 467-6, 전, 1,026m²
- 건물(소유:경상남도) :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384.49m²

나. 증축규모

- 1층 차고 및 식당 증축: 32.38m²
- 차고 앞 바닥면 높임

다. 소요예산 : 금72,618천원(도비)

4.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사용료의 감면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67-6(소유자:거창군)에 경상남도에서 공용건물인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를 차고와 식당 등 용도로 32.38m² 증축하고 차고 앞 바닥면을 높이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축하는 시설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가조 119안전센터 전경



건물 정면



건물 우측



건물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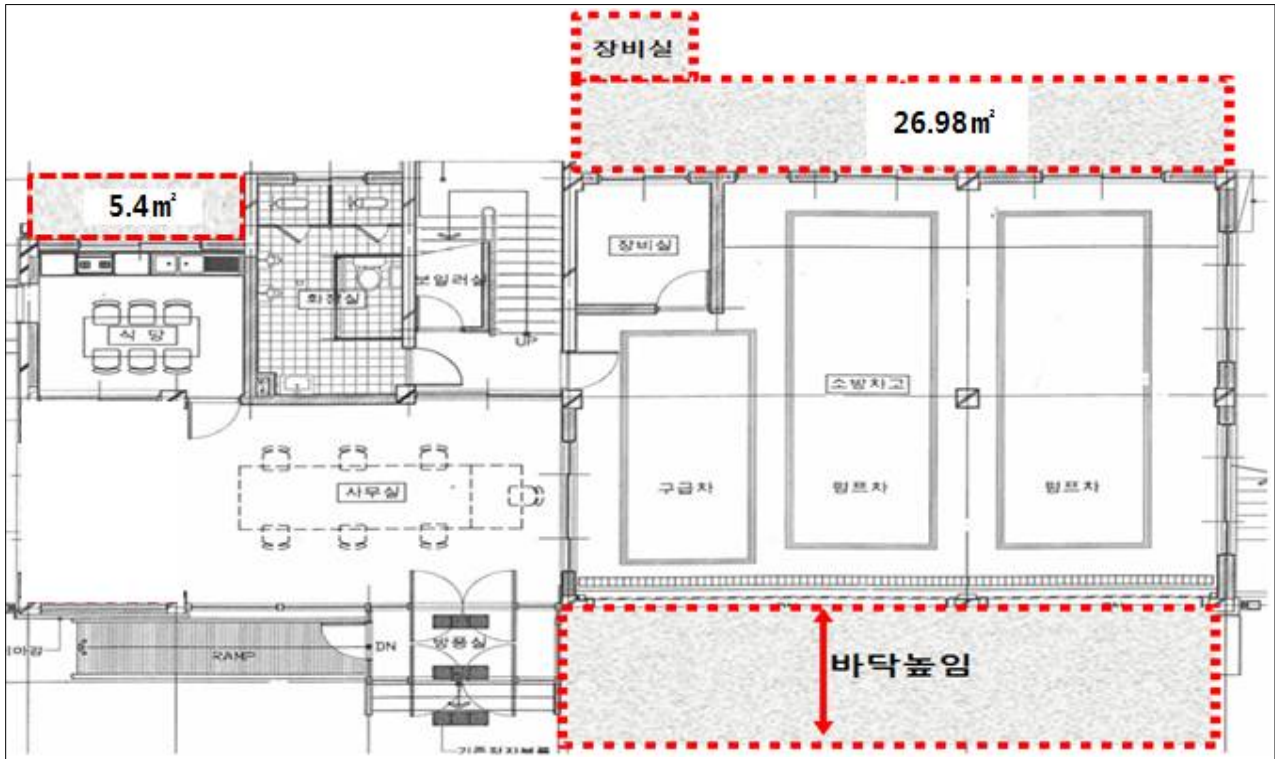


차고

□ 건물위치



□ 청사 배치도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2.]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3.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4.

2. 제안이유

- 전국 태권도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
-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숙박·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유치계획

연도별	대 회 명	대회개최 (예정)	참가규모	사업비 (천원)
2017년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	2017.5.6월중 (6일간)	2,200명	150,000

나. 대회개요

대 회 명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
주 최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후 원	거창군
일 정	2017. 5. 6월 중 (6일간)
참가규모	총 2,200명 (겨루기 : 60팀/1,500명 품 새 : 35팀/450명 본부임원 : 150명 지도자 : 100명)
예 산	150백만원 ----- 25,000천원 x 6일 = 150백만원
예산내용	인건비, 제작비, 진행비, 인쇄비, 회의비, 대회준비비, 숙박비, 홍보비, 장비임대료, 거창군 태권도 발전기금(장학금), 지원비 등

다. 기대효과

- 대한민국 국기인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
-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숙박·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4. 참고사항

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16. 6. 10: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 유치계획 (보고)
- '16. 6. 29: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 (한국대학태권도연맹)
- '16. 8. 23: 군의회 주례보고
(거창군 ⇔ 한국대학태권도연맹 MOU체결)
- '16. 9. 2: 군의회 임시회(제220회) 일반의안 상정
- '16. 9월 중: MOU 체결

나. 예산조치: 2017년도 본 대회 유치비 본예산 반영

다.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약정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제출건으로

나.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는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대회 유치하기 위한 것임.

다. 스포츠메카로 거창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참고자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비용 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
- 관련조문
 - 제3조(대회유치금 지급)
 - 제6조(권리와 의무)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 비용(a - b)		130				150	
세출	국비						
	도비						
	군비	0	150	0	0	0	150
	소계(a)	0	150	0	0	0	150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대한민국 국기인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 거창 홍보
-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숙박·요식업소 특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2017년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 약정서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하 “갑”)과 거창군(이하 “을”)은 “2017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이하“대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주관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제반사항과 태권도 활성화 및 저변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꾀함은 물론 국기태권도의 발전에 목적이 있다.

제2조(대회개요)

- ① 대회명 : 2017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 ② 기 간 : 2017년 5,6월 중 ⇒ 6일간
- ③ 장 소 : 거창군 실내체육관
- ④ 주 최 : 한국대학태권도연맹
- ⑤ 주 관 : 한국대학태권도연맹, 거창군태권도협회
- ⑥ 후 원 : 거창군, 거창군의회

제3조(대회유치금 지급)

- ① 대회유치금은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으로 한다.
- ②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을”은 대회유치금을 대회 25일전까지 “갑”의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가) 은행명 : 농협 나) 계좌번호 : 356-1146-4724-63
다) 예금주 : 한국대학태권도연맹(최재춘)

제4조(대회유치금의 사용 및 정산)

- ① 대회유치금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본 대회와 관련된 아래의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회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경기장 조성 및 경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
나)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및 종사자에 대한 제반 비용
다) 홍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
- ② 대회완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대회책자)

- ① “갑”이 대회 팸플릿, 포스터, 초청장 등 인쇄물을 제작하며, 제작에 필요한 자료는 “을”이 “갑”에게 제공한다.
- ② 대회책자(팸플릿)의 광고표지 2, 3, 4면은 “갑”이 활용하며, 개최지 “을”의 광고 할애는 10면 이내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갑”과 “을”은 대회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갑”과 “을”은 대회개최를 위하여 제반사항 및 경기운영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적극 협조 한다.
- ③ “갑”은 “대회” 개최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내용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 가) 겨루기 전광판, 경기장 매트, 호구 등 경기장 시설 설치
 - 나) 대회 홍보를 위한 팸플릿, 포스터, 초청장, 현수막 등 대회 선전비
 - 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운영위원(안내, 급수, 청소, 복사)의 선발 및 배치와 이에 대한 수당 등 제반 경비
 - 라) 대회 기간 중 통신설비 및 사무장비비 등
- ④ “을”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갑”에게 적극 협조 한다.
 - 가) 체육관, 냉·난방, 전기, 음향, 부대시설(사무실, 기자실, 심판휴게실 등) 사용
 - 나) 응급상황에 대비한 앰블런스, 간호사 2명 이상, 비상 구급약품 준비
 - 다) 거창군태권도협회는 대회진행을 보조 할 자원봉사요원(태권도선수)을 지원한다.

제7조(경기장 광고 및 타이틀 실사출력물 부착)

- ① 대회공식(메인타이틀) 및 실사출력물(내·외부 게첩용)은 “갑”이 제작하며, 대회 관련 홍보 실사 출력물(가두, 체육관 홍보, 환영 등)은 거창군태권도협회가 제작하고 제작비용은 각각 지급한다.

제8조(약정의 해석 및 관할 법원)

- ① “본 약정”의 해석 및 이행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 ② “본 약정” 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한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확정된 중재는 “갑”과 “을”에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갑”과 “을”은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8. .

(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34-28
라온스포츠상가 B동 1층 1호실

(을)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_____

거창군수 _____